서울시 정책

기후동행카드(청년할인 서비스)

사업개요

정책 유형	복지.문화
정책 소개	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(만 19~39세)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
지원 내용	사업 근거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1항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3항ㅇ 추진 경과-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: '23.9.11-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: '24.1.27-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: '24.2.26- 본사업 개시(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): '24.7.1 사업 기간: '24.7.1. 이후~ 계속 사업 대상: 만 19~39세에 해당하는 청년- '24년 기준 '85.1.1부터 '05.12.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- 단,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사업 내용-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'25년 사업비: 10,500 백만원 (지방비 100%)

신청자격

연령	만 19세 ~ 만 39세
학력	제한없음
취업상태	제한없음

서울시 고립·은둔청년 지원사업

사업개요

정책 유형	복지.문화
정책 소개	o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·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,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
지원 내용	○ (사업 근거)- 청년기본법 제21조(청년 복지증진)-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 12조(청년의 고용확대 등), 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, 제18조(청년의 건강증진)-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○ (추진 경과)- 2019년 :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(시범사업) 추진- 2020년~ :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- 2021년 :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- 2022년 : 서울시 고립·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- 2023년 : 서울시 고립·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- 2024년 : 고립·은둔청년 전담기관 '서울청년기지개센터' 개관○ (사업 기간) '20년~○ (사업 대상) 서울시 거주 19~39세 고립·은둔 청년- (연령 기준) 19~39

	세- (소득 기준) 없음○ (사업 내용) 고립·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맞춤지원- (원스톱 지원) 발굴→진단→지원→사회진입→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·관리- (주변인 지원)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,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- (생태계 조성) 민·관 다양한 자원 발굴,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○ (사업비) 4,329백만원 (지방비 4,329백만원)
사업운영기간	
지원규모	0

신청자격
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

사업개요

정책 유형	복지.문화
정책 소개	o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지원 내용	○ (사업 근거)-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(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) ○ (추진 경과)- 2019. 4.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- 2021. 7. 지원대상, 지원기간 확대('17.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, 3년 → 18.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, 5년)*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('21.7.13)- 2022. 8. 자립수당월 30만원 → 월 35만원 증액- 2023. 1. 자립수당월 35만원 → 월 40만원 증액- 2024. 1. 자립수당월 40만원 → 월 50만원 증액○ (사업 기간) '19년~○ (사업 대상)- (연령 기준)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·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(단, 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·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된 자- (기타조건)·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,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○ (사업 내용)-방문·우편·온라인 신청 시,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(최대 60개월)○ (사업비) 8,464백만원(국비 4,232백만원, 지방비 4,232백만원)
사업운영기간	
지원규모	0

신청자격

희망두배 청년통장

사업개요

정책 유형	복지.문화	주관 기관	돌봄고독정책관
정책 소개	학자금 대출, 주거비, 비정규직 취업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 의욕 고취		
지원 내용	□ 본인저축액:월 15만원□ 매칭지원 액: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 립□ 약정기간: 24개월(2년) 또는 36 개월(3년)중 선택□ 적립금 총액○ [15만원·2년]총 720만원○ [15만원·3 년]총 1,080만원□ 저축방법:매월 자동이체		
사업운영기간		사업신청기간	20250609 ~ 20250620
지원규모	10000	관련 사이트	

신청자격

연령	만 18세 ~ 만 34세
학력	제한없음
취업상태	재직자
추가단서 사항	
참여제한 대상	

신청방법

신청절차	□ 신청기간 : 2025. 6. 9.(월) ~ 6. 20.(금) 18:00 * 신청기간 외 접수 불 가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PC만 신 청 가능)	
심사 및 발표		
제출서류		
신청 사이트	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	

기타

기타사항	○ (사업 근거)-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·5조 및 시행규칙 제2·3조-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(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, '15.6.6)○ (추진 경과)-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출시('15년 1,000명)-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확대('18년 2,000명, '19~'20년 각 3,000

	명, '21~'22 7,000명, '23~'24 10,000명) 이 (사업 기간)- '25. 1월 ~ '25. 12월이 (사업비) 46,307백만원 (시비 45,307, 민간재원 1,000)
운영기관	
참고 사이트 I	https://youth.seoul.go.kr/content.do?key=2310100069

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

사업개요

정책 유형	복지.문화	주관 기관	청년사업담당관
정책 소개	o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		
지원 내용	이 사업 근거: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이 추진 경과① 긴급생활안정자금- 서울시-신용회복위원회-우리은행 협약 체결(2021년)- 서울시-신용회복위원회-신한은행 협약체결(2024년)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- 서울시-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(2017년)이 사업 기간: '12. 4. ~ (계속)이 사업 대상: 서울거주 19~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성실 상환자이 사업 내용- (긴급생활안정자금)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- (학자금대출 신용회복)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이 사업비: 530백만원 (지방비 100%)		
사업운영기간		사업신청기간	20250201 ~ 20251031
지원규모	0	관련 사이트	

신청자격

연령	만 19세 ~ 만 39세
학력	제한없음
취업상태	제한없음
추가단서 사항	

청년내일저축계좌(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 급 지원)

사업개요

정책 유형	복지.문화	주관 기관	복지기획관
정책 소개	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으로 지원하는 사업		
지원 내용	○ (사업 근거)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(자산형성 지원)○ (추진 경과)-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-2020년 청년대일저축계좌 도입-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(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→ 청년내일저축계좌)○ (사업 기간)- 2025년 1월 ~ 12월 시행○ (사업 대상)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15세 이상 ~ 39세 이하-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, 19세 이상 ~ 34세 이하○ (사업내용)- 차상위 이하(수급자 포함) ▶ 본인저축액:월 10만원이상 자율저축 (10만원 ~ 50만원까지) ▶ 정부지원액:30만원 (3년 평균 적립액:1,440만원+이자)- 차상위 초과 ▶ 본인저축액:월 10만원이상 자율저축 (10만원이상 자율저축 (10만원이상 자율저축 (10만원이상 자율저축 (10만원이상 자율저축 (10만원이상 자율자축 (10만원이상 지원액:720만원+이자)○ (사업비)88,221백만원(국비 60,151,지방비28,070) ※ 매칭비율 60:28:12- 청년내일저축계좌 81,286백만원 (국비55,422 지방비 25,864)		
사업운영기간		사업신청기간	20250401 ~ 20250430
지원규모	0	관련 사이트	

신청자격

학력	제한없음
취업상태	재직자
추가단서 사항	
참여제한 대상	